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16호 2020. 4. 17.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92호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2
- 삼척시 규칙 제593호 삼척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7
- 삼척시 규칙 제594호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11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302호 삼척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 1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7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6호 해안변 소규모 하수처리장 용량초과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일부사용 제한조치 완화 공고 ----- 26

공 람									
--------	--	--	--	--	--	--	--	--	--

제7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2020.4.1.)에서 의결된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0년 4월 17일

삼척시 규칙 제592호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삼척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의 개정) 삼척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기양양을 통하여”를 “사기를 북돋워”로 한다.

제2조(「삼척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삼척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삼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소속직원”을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삼척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

제3조(「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중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을 “정정 또는 지우거나 고칠”로 한다.

제125조제2항 본문 중 “해득”을 “이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정·도말 또는 개서 할”을 “정정 또는 지우거나 고칠”로 한다.

제4조(「삼척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의 개정) 삼척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도말 또는 개서할”을 “지우거나 고칠”로 한다.

제98조제6호 본문 중 “개묘·도말”을 “수정하거나 지운”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재차”를 “다시”로 한다.

제5조(「삼척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의 개정) 삼척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도말 또는 개서할”을 “지우거나 고칠”로 한다.

제99조제6호 본문 중 “개서, 도말”을 “고치거나 지운”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재차”를 “다시”로 한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양등”을 “상승”으로 한다.

제6조(「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제목 중 “구경별출수량기준표(내경)”을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안지름)”으로 한다.

제7조(「삼척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삼척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8조(「삼척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제9조(「삼척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삼척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보완·시정 요구”를 “보완요구”로, “설립준비대표자는”을 “설립준비대표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으로,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삼척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삼척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11조(「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때에는”을 “때,”로, “사항을”을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물건”을 “기부할 물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 7. 기부할 물건의 도면

제12조(「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삼척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를 “수행”으로 한다.

제13조(「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을 “상환”으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로 한다.

제14조(「삼척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을 “처리”로 한다.

제16조(「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장”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를 “해당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2020.4.1.)에서 의결된 삼척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0년 4월 17일

삼척시 규칙 제593호

삼척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2조제2항 관련)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대상자	개별 조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대형승용택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차량 총당연한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대형승합택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차량 총당연한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는 제외함 - 대형승용택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차량 총당연한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대형승합택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차량 총당연한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대상자	개별 조건	비 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 이고, 차량 층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1. 고급형은 택시부제 미적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함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 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는 제외함 -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 이고, 차량 층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설립된 기관 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강사 가 진행하는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 여야 함

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대상자	개별 조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전환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1,900cc 이상이고, 차량 층당연한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 공통 조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신청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5. 택시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단, 삼척시의 인가를 받아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 가능)
6. 해당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함
7.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함
8. 운행요금은 삼척시가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함 (단, 대형(승합)/고급형 택시는 자율로 신고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신고한 요금 적용)
9. 요금체계(대절·미터기·구간 요금 등)는 차량 내 여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며,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에도 게시하여야 함
10. 요금체계는 예약 시 전화,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객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함
11.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고 호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12.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 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하여야 함
13. 대형(승합)/고급형 택시는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단, 승객이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14. 고령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삼척시에 제출하여야 함
15. 모범형/대형/고급형으로 전환된 자는 희망(통학)택시 사업에서 제외함
16. 대형(승합)/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할 것(배회영업 금지)
17.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행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됨

제7회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2020.4.1.)에서 의결된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20년 4월 17일

삼척시 규칙 제594호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4월 13일

삼척시장 김양호

삼척시 훈령 제302호

삼척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삼척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삼척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국외를 여행할”을 “국외로 출장갈”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공무국외여행”을 각각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외여행자”를 “해외출장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각각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제기구는 제외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공무국외여행업무”를 각각 “공무국외출장업무”로 한다.

③ 심사대상에 위원 본인, 그 소속 직원이 포함되어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가 심사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시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9조제3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행”을 “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여행자”를 “출장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행기간”을 “출장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여행경비”를 “출장경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여행 계획의 변경 및 취소”)를 (“출장 계획의 변경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여행”을 각각 “출장”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공무국외여행자(이하 “여행자”)”를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하 “출장자”)”로, “여행 전에 여행자”를 “출장 전에 출장자”로, “국외여

제14조 전단 중 “공무국외여행자(이하 “여행자”)”를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하 “출장자”)”로, “여행 전에 여행자”를 “출장 전에 출장자”로, “국외여행에”를 “국외출장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여행자”를 “출장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여행자”를 각각 “출장자”로, 같은 항 중 “여행목적”을 “출장목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행자”를 각각 “출장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행자는 공무국외여행”을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여행자”를 “출장자”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내부 전산망의 행정시스템”을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여행”을 “해외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8조)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4. 출장일정 정보

출장국가	출장일자	방문도시(지역)	교통편	현지시간	주요일정

5. 출장자별 경비내역

소속	직위	성명	출장경비						
			항공비(원)	일비(\$)	숙박비(\$)	식비(\$)	기타(원)	준비금(원)	합계(원)
합계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지역 공무국외 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외사방첩활동 수행요령에 따라 「외사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절대 대외 유출을 금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나 행위를 절대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외사방첩활동에 위배된 행위나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아래의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 이적)

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분임 보안 담당관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국외출장자 수칙

-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시 귀국보고서 등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일정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 5. 출장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시장에게 신고한다.

년 월 일

출장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 의안번호 : 제 - 호 >

일시	년 월 일	장소				
의안						
의결 주문						
의결 이유						
출장 개요	소속	직 급	성명	출장국가	기간	출장경비

직 위	성 명 (서명)	심사결과		의 견
		가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6호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공무출장지	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박 일)			
	출장지				
항공 운임	적용 등급	1등석 <input type="checkbox"/> 비즈니스석 <input type="checkbox"/> 2등석 <input type="checkbox"/>			
	정액운임				
	청구금액				
마일리지 이용정보	기존 마일리지	마일			
	신규 누적 마일리지	이용 항공사			
		누적 마일리지			
	금번 사용 마일리지	활용방법	항공권 구매 <input type="checkbox"/> 좌석 업그레이드 <input type="checkbox"/>		
		사용 마일리지	마일		
총 마일리지	마일				
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 ※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금의 총액을 말함
-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삼척시 고시 제2020 - 7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철거)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17.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둔전길 104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4.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둔전리 70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둔전길 104	20200417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8외 46필지	강원도 삼척시 뒷나루길 153 (교동)	20200417		20090626	지역지명(후진) 옛명칭활용
3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길 53-10 (남양동)		20200417	건물철거	20090626	시설물명칭(중앙시장) 활용(기존도로명)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교시일	사유	도로명 교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계	주소	건수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둔전리 70	3 건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둔전길 104	104	20200417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8외 46필지		강원도 삼척시 빛나루길 153 (교동)		20200417		20090626	지역지명(후진)옛명칭활용	삼척시민체육관
폐지	3	강원도 삼척시 중앙시장길 53-10 (남양동)				20200417	건물철거	20090626	시설물명칭(중앙시장)활용(기준도로명)	정금장

삼척시 공고 제 2020 - 16호

해안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용량초과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일부사용 제한조치 완화 공고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3호 「해안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용량초과에 따른 일부사용 제한조치」에 대하여 완화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삼척시장

1. 공공하수처리 일부사용 제한지역

하수처리장	처리구역	시설년도	처리용량(㎥ /일)	해당 읍·면
원 평	궁촌1, 매원2리	'14.06('15개량)	70	근덕면
초 곡	초곡1,2리	'14.06	60	근덕면
용 화	용화1,2리	'05.08('15개량)	100	근덕면
장 호	장호1,2리	'06.11	170	근덕면
갈 남1	갈남1리	'12.04	50	원덕읍

2. 제한 완화 사유

- 「분류식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을 철거 후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한 곳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시 오수량 산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을 개인부담으로 재 설치 해야하는 문제점 해소

3. 제한대상

- 단독주택(5인기준 또는 1톤 미만) 외 모든 신축 건축물(증·개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포함)
⇒ 본 구역 배수설비 : 개인하수처리(오수처리) 시설 설치
- 단,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는 건축물 중 유입전 「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하던 건축물은 기존 오수처리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 등 행위 가능

4. 제한기간 : 2017. 03. 01. ~ 시설확충 시까지(완화적용 : 2020.04.03.부터)

5. 공고기간 : 2020. 04. 13. ~ 2020. 04. 28.(15일)

6. 해안면 소규모 하수처리장별 위치도

가. 원평 소규모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나. 초곡 소규모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다. 용화 소규모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라. 장호 소규모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마. 갈남1리 소규모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